

국내 민간기록관리의 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성 연구*

An Study on New Direction of Archival Management Policy in Civil-Sector

윤은하(Youn, Eunha)**

1. 들어가며
2. 민간기록의 정의와 범주
3. 민간기록관리의 특성과 정책 방향
4. 민간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 및 계획 수립
5. 나가며

* 이 논문은 2021년 국가기록원 정책연구용역 과제 완료보고서의 일부를 정리하여 작성하였음. 본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8099507). 이 논문은 2022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전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부교수,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 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E-mail: eunhayoun@gmail.com)

■ 투고일: 2022년 03월 30일 ■ 최종심사일: 2022년 04월 05일 ■ 최종확정일: 2022년 04월 13일

■ 기록학연구 72, 5-32, 2022, <https://doi.org/10.20923/kjas.2022.72.005>

〈초록〉

민간에서 시민이 자신의 기록을 수집하거나 아카이빙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누려야 하는 정당한 권리며, 국가는 이러한 시민의 기록활동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관리 체계는 민간기록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원 대상에서 민간기록을 배제하고 있다. 민간 기록은 한번 소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복원이나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민간기록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하고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두 가지, 시민기록문화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안정적 지원, 그리고 민간기록의 안정적 관리 보존을 위한 지역 내 민간기록수집 및 보존을 위한 조직과 물리적 공간의 지원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민간기록관리의 개념적 범주와 현황, 그리고 민간기록관리 정책 수립 시 고려가 필요한 민간기록관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제어 : 민간기록관리, 민간기록관리정책

〈Abstract〉

Collecting, archiving, and using civil records in the private sector is recognized as part of the legitimate rights that citizens should have in civil society. However, the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does not have a balance between private records management and public records management, and private records are excluded from appropriate government support. Considering that civilian records cannot be restored or restored once lost or damaged, it is clear that national attention and support are needed. This study discusses the need for institutional support for private records and has two main directions for support policies: sustainable support for the revitalization and

promotion of civic records culture, and within the region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private records. It was identified that a stable organization and physical space support were needed for the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private records. And to put it into practice, the conceptual categories and current status of private records manage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records management that need to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a private records management policy were examined.

Keywords : Archives Management, Non-Public Records, Non-Public Records Management, Civil Records

1. 들어가며

민간분야 기록관리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와 의견, 문화와 생활을 기록하고 남기는 작업이다. 민간기록에는 그 당시 사회의 중요한 정치, 경제, 기술, 교육 등의 사회적 가치가 있다. 한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과 경험, 일상, 도덕과 가치관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때문에 공공 기록의 역할이 정부 행정 투명성의 확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 도구라면, 민간기록은 사회 구성원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을 지지함으로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시민 사회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실천적 도구로 이해될 수 있다.

현재 민간에서는 시민 개인과 단체 스스로가 일상을 기록하고 남기는 밑으로부터 시민기록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과 시민 공동체들이 생활문화의 일부분으로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며 기록활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아카이빙 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그 국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단체나 개인의 책무로 인식, 정부 차원의 적절한 관심과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대개는 소규모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거나 민간단체 내의 자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껏 국가기록관리체계의 모든 관심은 공공기록 영역에 편중되어왔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체계 덕분에 공공기록은 국가기록관리체계 내 제도적 관리로 인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함에도- 민간기록의 수집과 관리는 소홀히 여겨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유사 기능 및 유관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체계는 이미 민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국가기록관리체계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박물관과 도서관 등은 모두 시민사회의 문화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공중의 문화 향유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제공하고 있고, 도서관 역시, 각각 그 수준과 목적, 규모에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과 「대학도서관진흥법」, 「작은 도서관진흥법」을 제정·지원하고 있다. 역사 기록의 수집과 보존을 위해서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조직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유사 법령 및 유관 영역에서 기록을 다루고 있지만, 지역 내 민간기록관리 및 시민기록문화 지원 활성화를 다루고 있는 법은 아직 없다. 이에 본고는 민간분야 기록관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기록관리 분야에서 민간분야 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한 진흥조직의 설립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특히 이는 단순히 민간 기록의 수집과 보존 업무에 대한 정부 지원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민간에서 활발한 시민기록 활동이 사회적 지속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기록생태계를 구성하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 기록활동에 대한 적절한 공적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민기록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분야 기록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민간분야 기록관리 대상을 규명하고 이에 적합한 제도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기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이 대상이 되는 민간기록의 범주를 규명하고 민간기록관리와 지원 체계의 방향성, 나아가 좀더 구체적으로 진흥조직 구성과 민간기록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민간기록관리 정책 수행 방향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민간기록의 정의와 범주

일반적으로 민간기록물이란, ‘중앙정부, 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공공영역 이외에 속하는 기관 및 개인이 생산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의미한다. 이미 2014년에 김지현은, 논문을 통해 ‘민간기록물은 중앙정부, 정부산하기관 및 부서와 같은 공공영역 이외에 속하는 기관 및 개인이 생산한 비정부 기록물로, 개인, 가족, 비영리기관, 기업, 사회적 사건과 행사 등 비공식적 활동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의미한다’고 정의내렸다(김지현, 2014). 미국의 용례에서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가족 및 비공식적 단체들이 특정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지 않고 생산한 기록물(Fisher, 2011)’을 의미하는데, 이는 민간의 일상과 문화를 담고 있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영역 이외에 속한 개인과 단체가 생산하거나 취득할 뿐 아니라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로 이해된다.

현장에서 민간기록은 기록의 대상이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으며 나아가 특정 지역, 특정 기록의 매체나 유형을 배제하지 않으며 수집되고 있다. 즉, 민간기록은 민간과 공공이라는 기록 생산 주체나 취득 주체, 혹은 지역과 주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경험과 정체성, 그리고 역사문화를 반영한다면 유형과 관계없이 민간기록의 범주로 인식되고 있다. 민간 영역은 공적 영역 이외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민간에서 생산된 기록은 공공영역에서 생산되었음에도 그것이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었거나 다른 개인 사적 기록물과 함께 일정한 맥락을 가지고 보존되고 있다면 민간기록의 범주에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소장한 19세기 토지소유권 증빙 기록이나 재판기록, 세금 영수증 등은 모두 공적 영역의 출처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다면 사적인 민간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기록의 법적인 정의에서도 2021년 개정된 「국가기록원 훈령」에 따르면, ‘민간기록물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자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정의에서도 시간적, 지역적, 내용적, 출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민간기록은 어떠한 유형의 기록물을 의미하는가. 전주시민기록관에서 수집,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의 내용과 유형은 민간기록의 포괄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전주시민기록관 민간기록물 유형을 보면, 수집된 기록물의 유형 박물 유형이 644건, 도서가 609건, 시청각 유형 453건, 문서 유형이 306건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이 전체 기록물의 83%를 차지하는데, 일반문서 유형보다는 특수유형의 기록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김영선 외, 2021). 특히,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에서 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민간기록의 유형은 상·훈장류, 생활용품, 기념품, 인쇄물, 필기 용품, 유물, 지도, 포장 용품, 화폐, 편지/일

기, 스크랩, 입장권/탑승권, 복권/채권, 의류, 표식류, 간행물, 정기간행물, 일반도서, 교과서, 도록, 족보가 있다. 여기에는 사진, 앨범, 엽서, CD/DVD, LP, 비디오, 필름, 포스터, 카세트테이프, 엽서집, 필름집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소장기록물은 대개 1970년 이후 최근 기록물이 주를 이루지만 총 36점의 기록물은 “일제강점기 문서들(영수증, 매매문서, 우편물 등)”, “조선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 서신”, 전북일보 영수증, 여행목적 증명서, 전주 산업조합, 대일민간청구권 신고 접수증”등의 역사 기록도 있으며, 신문, 증서, 통지표, 일반문서, 공문서, 일람표, 영수증, 명세서, 계약서/청약서, 표식류, 채점표, 금전출납부, 방명록, 명부, 전 화번호부, 주소록, 인사기록 카드와 명함, 투시도면, 평면도면 등 공적, 사적 문서들도 있다.

민간기록이 가지는 포괄적 특성은 민간기록물의 생산, 관리 주체가 하나의 유형이나 범주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는 데에 기인한다. 2021년 국가기록원의 민간분야 기록관리 관련 현황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민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는 대략 380개 정도로, 교육, 국방·보훈, 경제·행정, 문화·예술·종교, 법무·노동·복지, 역사, 외교·통일, 환경·과학, 공동체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주제에 걸쳐 있다(국가기록원, 2021)¹⁾. 사실, 김유승은 공동체의 다양성 만큼 그들이 생산해 내는 기록물도 다양하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민간 영역의 다양성과 그 다양성으로 인해 민간기록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불가능하다고까지 지적한다(배양희, 김유승, 2017). 민간에 존재하는 많은 비영리단체는 하나의 조직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개별 목적에 따른 다양한 민간 기록물을 생산, 관리, 보존하고 있는 민간기록관

1) 국가기록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기록물 소재정보 사업을 통해 꾸준히 민간에서 생산, 관리되는 민간기록의 소재파악을 시도해왔으며, 2021년 임신영, 이혜일은 「민간분야 기록관리 관련 현황 및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를 기록관리이슈 페이퍼에 출판하기도 했다(국가기록원, 2021).

리의 잠재적 기록관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²⁾ 사실상 민간기록의 범주는 더 다양하고 포괄적일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

다양한 민간기록관리 수집 활동과 아카이브가 존재하지만, 가장 국내에서 활발한 민간기록 활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록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민간 기록관리 활동은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마을아카이브나 마을공동체사업, 지자체 민간기록공모사업 등에서 두드러진다. 이경래는 한국사회는 서구에 비해 공유된 정체성이나 관심에 근거한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대신 특유의 마을공동체가 발전해 왔다고 지적했다. 즉, 지역을 근간으로 한 공동체가 발전하고 이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동이 2000년대부터 활

분야	아카이브 예시
① 교육	• 건국대학교박물관, 교과서박물관, 국제삼성출판박물관, 국제교육진흥원,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상담교육연구원 등
② 국방·보훈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극동문제연구소, 매한기념관, 부산광복기념관, 아단문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
③ 경제·행정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새마을운동중앙회, 언론인권센터, 지역발전연구소, 지방행정발전연구원 한국경영통계연구소, 한국행정학회 등
④ 문화·예술·종교	• 성북문화원, 제주문화원, 원불교역사박물관,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대한아구협회, 한국무용협회, 다음세대재단, 서태지 아카이브 등
⑤ 법무·노동·복지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사회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⑥ 역사	•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민해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역사학연구소, 한국근현대사박물관 등
⑦ 외교·통일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남북평화재단,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평화문제연구소, 평화재단, 한반도평화연구원,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지구촌동포연대 등
⑧ 환경·과학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실천운동연합, 숲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⑨ 공동체	• 해방촌기록단, 오늘공동체, 삐띠협동조합, 성북마을아카이브 등

- 2) 2021년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영리 혹은 비영리 조직(NPO) 및 단체 수치는 약 15,160개이며 이중 중앙행정기관이 1,719개, 시도의 지자체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는 13,441개에 해당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직 및 단체는 교육, 국방, 보훈, 경제, 문화, 종교, 예술, 역사, 외교, 통일 등 전 주제 분야에 걸쳐 있으며, 민간기록을 생산·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국가기록원, 2021).

성화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최근 지역성을 보여주는 풀무 아카이브와 같이 자생적 민간 아카이브부터 서울시 마을아카이브 구축사업, 은평 마을아카이브 시범사업, 성미산 마을아카이브 시범사업 등 민관협업 마을아카이브 사업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마을을 토대로 한 민간기록이 활발히 생산되고 있다(이경래, 2013). 이는 국내 민간기록관리는 풀뿌리 민중 운동이라는 성격과 함께 국내 민간기록의 특징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성이 그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됨을 의미한다.

특히, 국내에서 마을이라는 지역적 경계를 바탕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자신들의 기록물이나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장하게 된 기록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기록관리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손동유는 지역 기반의 마을공동체는 주체, 대상기록의 특성, 목적 지향 등 공동체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모델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들이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설립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손동유, 2019). 경기도 김포시 김포문화재단, 시흥시 시화공단 군자·소래 염전 지역기록 아카이빙, 부산 영도구와 영도문화원, 원주문화재단, 증평군, 서울시 정릉의 정말기록당, 강원도 원주 강원아카이빙 조합, 파주 교하 지역 지역 아카이빙 사업, 군포문화재단, 충북 제천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도시재생 과정 기록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지역민이 오랫동안 소장한 기록들이나 단체가 생산, 관리하고 있던 기록물들을 수집하여 보존, 관리하는 민간기록수집 사업도 이러한 지역의 민간기록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2021년 수행한 국가기록원의 2021년 『민간분야 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민간기록수집 및 공모, 교육, 전시, 활용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약 40여 개로 알려져 있다³⁾(국가기록원, 2021). 이 중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가 28개로 가장 많았고 이 외 구술채록 사업, 민간기록 수집

사업, 기록화 사업 및 마을 기록활동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의 민간기록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하며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 문화의 토대로 작용한다. 특히 마을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개인과 지역의 문화적 토양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은 개인의 속한 지역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명지대 김익한은 ‘마을은 공동체적 삶의 말단 현장이며 동시에 시민사회의 기반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한 민주주의 말단’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지역사회와 현장 민주주의로서 마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기반의 현장 민주주의, 생활 민주주의의 실천의 한 형태로 마을 아카이빙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김익한, 2010).

특별히, 이영남과 조영삼은 국내 기록관리영역에서 민간기록에 대해 1945년 이후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형성 이후 민간에서 생산,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별도로 시민기록으로 구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 이는 일상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 마을 공동체 기록관리 활동 등 대개의 민간기록과 관련된 활동이 근현대 역사 시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 이후 일상의 문화 활동과 연관되어 발전된 담론이라는 데 그 연유가 있다. 즉, 민간기록이 시대적 구분이나 기록이 가지는 정치·사회적 함의가 들어있지 않은 중립적 용어인 반면, 시민기록이라는 용어는 좀 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시민사회의 형성과 그 속에서 의식화된 개인의 기록이라는 역사·사회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3) 2021년 9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수집, 분석 결과, 전국 지자체 민간기록물 관련 사업 추진 지자체는 총 44개로 그중 기록관에서 수행하는 지자체는 22개, 그 외 부서(도시 재생 부서 등)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22개로 나타났다(국가기록원, 2021).

4) 따라서 일각에서는 국내 민간기록에 대한 범주와 개념을 1945년 이후에 민간에서 생산되거나 보존하고 있는 기록으로 시대적 구분을 추가하여 좀 더 민간기록물의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있다.

이영남은 시민기록이라는 함의 속에는 인권의 관점, 그리고 정치적 주권의 관점이 들어가 있다고 말한다.⁵⁾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국가에게 시민이 민간 아카이브에 관한 지원을 요구한다 것은 정치·사회적 방향성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민간기록이라는 용어보다는 시민기록이라는 용어가 더 적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민간기록을 시민기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민간기록에 대한 일종의 표준화된 국가주의적 접근을 거부하고 개별 주체인 시민에게 기록관리가 일상생활의 일부로 여기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영삼 역시, 이는 마치 ‘기록관리가 일상에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⁶⁾ 이는 시민기록이 민간의 다양한 생산, 관리 주체의 기록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아카이브와 달리 시민 아카이브는 시민의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 민간기록관리를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기록을 수집, 진흥한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도 민간기록을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McKemmish, Gilliland, 2014; Caswell, 2014) 시민이 스스로 역사적 경험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록을 가지고 이를 주도적으로 아카이브한다는 인식은 이미 학술적 논의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실제 몇몇 지자체에서는 민간기록 아카이브를 시민기록관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고 있음도 주목할 사실이다.

민간기록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공동체 기록이다. 개인기록이 개인이 일상생활을 통해 생산한 기록물로 스스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대와 지역을 아울러 생산·소장하고 있는 기록들을 의미한다면, 공동체기록은 공동체의 경험을 기억하기 위해 공동체와

5) 이영남 (2021), 2021년 11월 4일 서울에서 저자와의 면담

6) 조영삼 (2021), 2021년 10월 17일 서울에서 저자와의 면담

단체, 기관, 조직 등이 스스로의 기록의 생산·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의미한다.⁷⁾ 비영리 집단 NPO 내 박물관 및 도서관, 공동체 및 마을아카이브가 이에 해당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잠정적으로 시민기록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자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기록을 수집하고 있는 단체는 이미 약 380개 이상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안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비영리단체(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나 등록되지 않은 조직과 공동체 들 중에서도 기록과 기록관리를 수행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다면 이들도 잠재적 민간기록 생산 주체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수치를 확정할 수 없다. 이들은 주로 단체나 조직의 역사와 경험에 관련된 기록물을 생산, 소장하고 있는데, 손동유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들 기록은 ‘공동체 형성 배경과 일상생활, 주요활동 및 계획을 담은 기록, 공동체 삶에서 볼 수 있는 상호부조, 갈등, 분쟁, 협상, 화해 등을 담은 기록, 구성원들의 조직, 성장, 분화 등을 담은 기록, 지역의 공동체 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단적 기억에 대한 기록과 구술기록, 이 밖에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의 의미, 형성과정, 과제 등을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종 회의록, 공동체의 행사 및 특정 사안과 관련된 자료집, 기념품, 사진, 경조사 관련 자료, 관공서 홍보물, 소통자료,

7) 손동유는 개인기록의 범주를 ‘마을이나 공동체에서 개인의 삶을 영위한 다양한 흔적을 보여주는 기록, 일과 경제생활, 여가생활, 문화생활, 친교 등을 담은 기록, 고등학생의 과외활동, 놀이문화, 동아리 활동 등과 관련된 기록, 청년 및 청소년, 노동 청년들의 사회문화 활동 일상과 관련된 기록, 예술 분야의 전업 작가들의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작품 활동과 관련된 기록, 노년층의 인생 기록 또는 기억과 경험을 담은 기록, 이 밖에 가족 단위 등 지역의 일상과 관련한 모든 기록’으로 이해한다(손동유, 2019). 이 때 개인기록은 지역의 경험과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는 기록으로 지역 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로서, 주제와 유형이 다양하다. 1945년 이전의 역사기록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개는 1960년 이후이며 종종 2000년대 기록물도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정책적 대상이 되는 민간기록의 범주는 정부 기관과 달리 생산 주체가 광범위하며 실질적으로 개인과 조직, 단체 등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 보존, 활용하고 있는 사회 전 범주가 그 잠재적 대상 범주로 포함될 수 있다.

각종 온라인 자료, 사진 영상 등도 예시가 될 수 있다(손동유, 2019).

이러한 시민기록 활동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민간기록을 수집관리하고 있는 유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의 민간기록에 대한 관점과는 분명한 차이를 지님을 알 수 있다. 즉, 박물관에서의 역사 사료 수집은 주로 과거 역사 시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자들을 위해 당대 사료적 가치가 분명한 기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다. 때문에 지역의 오래된 기록들이나 시민의 기록활동들은 대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시민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기록들, 예를 들어, 지역 달력, 지역 홍보 리플릿 이나 생활용품 등과 같은 유형의 시민기록은 지역 박물관 및 역사 사료 수집기관의 수집대상에서 벗어난다. 이렇듯, 박물관, 역사 사료 수집기관이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기관으로 성격을 표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시민기록관은 지역민, 마을, 공동체, 개인, 조직과 단체 등 일반 시민 전체를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록 수집뿐 아니라 활용을 통한 지역 사회와 단체의 건전한 정체성 수립 및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들 시민 기록이용자들의 기록 이용권과 접근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박물관 및 도서관의 역사 자료 수집과는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국가기록원, 2021).

3. 민간기록관리 체계의 특성과 정책 방향

그렇다면 이러한 민간기록의 관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민간 기록의 경우, 그것이 개인기록이든 공동체 기록이든 간에 그들 기록의 소유권과 보관권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기록의 보관권(custody)은 주로 개인이나 기록 소장자가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들은 자신들의 중요한

민간기록의 원본을 직접 지자체에 기증하기보다 원본기록에 대한 디지털 사본을 기증하는 경향이 있다. 지자체의 각종 민간기록 공모전을 통해 지자체에 수집된 개인기록들은 기증자가 지자체에 자신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넘기고 기록물 원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기록물 원본을 직접 기증하기보다는 디지털 사본만을 기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또는 지자체 역시 실질적으로 민간기록관리를 위한 서고 등 물리적 보존 공간이 부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굳이 소유권 이전을 강요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신 도록이나 책자를 제작하고 원본을 소장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여전히 가치 있는 민간기록의 관리와 보관이 개인의 책임과 권리의 영역으로 귀결버리는 한계를 가진다.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민간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민간에서 가치 있는 기록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멸실을 방지하고 동시에 활용을 높힐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저작권 문제 해결이 해결과제로 미해결 될 경우 원본의 보존의 문제를 넘어 기록 이용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기록의 보관권(custody)의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이들 아카이브는 개인과 달리, 공동체 활동 기록으로부터 소장하고 있는 스스로의 역사 문화적 시건 및 인물에 관한 역사 기록들을 소장, 관리하고 있는데, 대개는 조직과 단체의 정체성과 역사를 남기기 위해 생산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1차적 기록 향유 대상자는 소속 기관이나 단체, 공동체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과 단체의 경우, 기록의 관리권(custody)을 넘기지 않고 스스로 소장하고 있으면서 활용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공동체는 보관권을 넘기지 않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이 불충분하여 비용과 인력 측면에서 볼 때 아카이브를 설립하고 유지할 장기적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영세한 비영리 단체나 수명이 짧은 공동체의 경우 아카이브를 위한 물리적 공간 문제가 여의치 않

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대도시의 경우 비싼 임대료로 인해 기록을 위한 물리적 서고를 별도로 소유,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동체에서는 시민 기록관리 및 보존을 위한 공적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거나 시설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다. 즉, 보관권을 주장함에도 열악한 아카이브 환경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실제 체계화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정부에 민간기록관리 시스템과 전문인력, 물리적 공간 등 공적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더불어 공동체 기록은 기록 보존뿐 아니라 기록의 이용에서도 공동체 및 조직의 이용이 일차적 목표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공동체의 경우, 개인과는 다른 차원에서 단순 민간기록 수집 대상 주체가 아니며 조직 및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인 기록 생산과 보존을 통해 공동체 정체성과 기록문화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전한 물리적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을 넘어 이용권 및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민간기록관리 지원체계는 민간기록물 유형, 생산 맥락, 관리 체계 및 활용 주체의 다양성에 대한 지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진지하게 고려한 입법 체계 및 국가기록관리 체계와의 연관성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민간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성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첫째, 중앙의 민간기록 지원 제도 및 조직은 지역 민간기록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육성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 둘째, 공동체 내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공동체 내에서, 지역에 기반한 기록물은 그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 셋째, 지자체 내 다양한 조직 및 문화 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민간기록은 지역별, 주제별 분산되어 생산, 관리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관치·이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첫째, 민간기록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강화하는 방식의 지원체계 수립이다. 공적 지원정책은 민간기록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보존하고 지원하는 체계 수립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민간기록이 가지는 속성들, 포괄성과 다양성, 지역성을 인정하며,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에 관한 개념과 관리권을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관리체계 수립해야 한다. 민간에서의 자발적 아카이빙 운동을 공공기록관리 체계와 같은 범국가적이고 규범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자칫 국가기록관리 체계가 ‘제초제’와 같은 역기능적 작용을 할 위험이 있다. 이를 경계하고 개별 공동체 및 지자체 상황과 맥락에 적합한 유연한 기록관리 지원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혹은 개별 사례별로 독립적이고 다양한 방식 인정하되 아카이브로서 가져야 할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즉 민간기록 관리체계는 개별 지자체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연한 지원체계를 필요로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와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민간기록관리의 공적 지원체계는 이러한 민간의 특성, 다양성과 독립성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공동체 기록은 공동체 내’에서, ‘지역에 기반한 기록물은 지역에서’ 관리이다. 개인과 단체 및 조직의 기록물들은 공동체와 지역을 근간으로 한 기록관리체계 수립이 중요하다. 즉,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기록관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그 지역 내 생산, 관리, 유통되는 민간기록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지원 체계 역시 지역의 지방기록물 관리체계가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지역민, 시민과 도민의 역사와 경험이 담긴 개인 기록물과 조직 및 단체의 기록물을 수집·관리·보존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지역의 기록물은 그 지역의 지역민이 정체성 형성과 지역 문화 발전에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공동체 기록은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지역의 기록은 지역 내에서 보관권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물리적, 기술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상황과 조건에 적합한 민간기록관리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지역민을 위해 지역 민간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동체 기록은 공동체의 영속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위해 생산된다. 다양한 단체와 조직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역사를 기록하고 이러한 기록을 스스로 정체성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스스로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하기를 원한다. 아카이브를 운영, 보존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요구한다면 그들 공동체 기록을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공적 지원체계는 이러한 민간기록 환경을 염두하고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이러한 전제하에서 물리적 공간, 제도적 규범, 전문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민간기록 수집과 시민기록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과 물리적 공간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 내 다양한 조직 및 문화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모델의 도입이다. 민간기록관리체계의 구축은 민간 조직 및 단체, 지자체 기록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및 진흥재단을 중심으로 하되, 보다 폭넓은 사회문화 자원기관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네트워크를 통한 민간기록관리 및 이용 협력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민간영역은 하나의 획일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몇몇 공적 주체가 모든 민간영역에서 필요로 되는 지원, 보존 및 수집, 활동을 해결할 수 없다. 때문에 기관 간, 공동체 간, 개인과 단체 간의 다양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기록의 수집뿐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 즉 민간기록 생산환경 분석, 시민기

록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네트워크 구축, 시민기록 활동 지원, 시민 기록활동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과 역할이 필요하며 이러한 민간 기록과 관련된 다각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화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과거 공적 영역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졌던 민간기록관리 지원 사업이 단발성으로 그치고 지속성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과거 사례(‘기록사랑마을’)를 비추어볼 때 좀 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발굴·유지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적합하다. 즉, 다양한 주체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민간기록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시민기록문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기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점을 궁극적 목표로 해야 한다.

넷째, 민간기록은 분산되어 생산, 관리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적 관리·이용시스템 필요하다.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과 달리 생산, 관리, 보존, 활용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다. 공공기록은 생산 시점부터 등록의 절차를 거쳐 일괄적으로 관리되고 정보공개 청구라는 단일한 창구를 통해 활용으로 이어지지만, 민간기록은 다양한 출처에서 생산되어 분산, 관리, 보존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별 지자체에서 수집한 개인 기록물의 관리, 활용과 더불어 다양한 공동체 및 조직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상용화된 민간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텍스트, 이미지, 소리, 동영상을 모두 포괄하는 기능들을 포함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핵심 콘텐츠를 기획하여 각 지역과 단체들의 기록정보를 통합하는 지식 기반 시스템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이연창, 2021). 이를 통해 다양한 조직 및 단체은 스스로 기록을 직접 생산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시스템을 통해 민간기록을 등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집, 관리, 보존, 활용 등 민간기록을 하나의 문화 자원으로 제어하고 장기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카이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민간기록은 유관 기관에서와 같이 단순히 상용화된 관리 시스템의 개발로 그칠 수 없는 다양성과 복잡성이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 주체와 공동체, 그리고 그들의 기록들이 아카이브라는 활동을 통해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에 대한 요구의 수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실 민간기록 관리 시스템에서 중요한 점은 민간기록을 소장, 관리하고 있는 기관과 개인을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민간기록 관리는 활동 내용과 범위에 있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축된 네트워크는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단순한 기록 정보 링크를 넘어서 민간기록관리를 위한 기관 간, 그리고 개인 간에 실질적인 교류 활동과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로 구축되어야 한다(이연창, 2021).

이러한 민간기록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단순히 개별 기관에서 필요한 민간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민간기록관리 주체들이 접근하고 교류할 수 있는데, 민간기록이 보존 중심의 아카이브가 아니라 시민기록활동을 지원하는 다각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연창은 이러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관계형 아카이브 모델로 명명했는데, 과거 독립적으로 기관 내 존재하고 운영되던 모델로부터 각기 다른 아카이브와 공존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네트워크 모델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민간 이용자와 기관 역시 단순히 수집이나 기록 열람 대상을 넘어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개방된 방식으로의 참여형 아카이브로 나아갈 수 있다(이연창, 2021). 이러한 개방적이고 상호 네트워크로 연계된 시스템은 민간기록관리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간과 민간, 민간과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그리고 사회문화 역사 분야의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되어 민간기록정보 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 다양한 주체들 간에 자연스러운 거버넌스 모델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민간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언급했듯이, 민간분야 기록관리 분야 활성화에서 중요한 점은 한편으로 민간기록 수집과 관리를 위해 필요로 되는 적합한 공적 지원체계의 구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자발적인 기록문화 진흥을 통한 기록생태계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사회적 기억의 보존과 시민사회에서 기록관리문화의 확장성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관리체계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공공기록관리를 중심으로 조직된 체계로 실질적으로 민간 기록관리를 지원하고 나아가 시민 영역으로 기록관리 활성화를 모색하기에는 제도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시민 영역에서의 민간기록 아카이빙은 공동체와 비영리단체, 조직과 지역 개인들로 이루어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의 공공기록관리체계의 틀에서 그 유연함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민간기록수집의 역할을 넘어선 것으로, 지역과 공동체, 조직과 단체가 기록을 통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발휘하고 이를 근간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델을 수립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기록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공적 지원을 위한 국가기록관리 체계 역할의 확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민간기록관리에서 공적 지원은 민간영역의 실질적 요구를 수용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 및 시민기록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이것이 단발적인 공적 자금의 투입이나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명이라는 점으로 이해된다면 민간기록관리를 포함하는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개편과 확장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나아가 민간기록관리 진흥조직의 설립을 통해, 시민사회에 적합한 기록문화를 조성하고 장기지속형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민간기록관리 영역의 활성화를 체계화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민간기록관리 진흥을 위한 입법과 진흥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 즉, 시민문화 차원에서 민간기록문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원 마련과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기록 활성화를 위한 진흥조직의 설립과 진흥 제도의 정착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진흥조직은, 무엇보다 민간기록의 체계적 수집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을 담당하여, 국가기록원을 비롯,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지자체의 민간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필요한 제도적, 환경적, 물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기록관리체계 내에서 민간기록관리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흥조직의 중요한 역할은 시민기록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계획수립이라 할 수 있다. 시민 일상 생활문화의 일부로 기록의 생산과 아카이빙이 자연스럽게 인식되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민간기록이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의 탐색을 해야 한다. 이에는 시민의 기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문화로 기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전시, 홍보와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포함된다. 특히, 이러한 민간기록관리 업무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금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민간기록관리 및 시민기록문화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시민기록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성과 상호연대 협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관한 계획 수립 역시 진흥 조직이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 할 수 있다. 이에는 민간기록관리 업무관리 시스템과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 민간기록관리 상용 DB와 같은 민간기록관리 아카이브 시스템을 개발·보급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민간기록의 체계적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관, 공동체와 개인을 연결시키는 시민기록 네트워크 허브를 마련해야 한다.

또 진흥조직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기록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설 및 민간 활동가를 위한 프로그램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민간기록은 공공기록과 그 속성과 관리 측면에서 차별화된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 때문에 현재 공공기록관리 교육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록관리 지식 기반에 근거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록연구사, 사서 및 학예사 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이 민간기록의 특성과 기록관리의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진흥 조직은 민간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외에 지자체 민간기록관리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대한 현황과 실태파악, 통계 지표 작성들을 분석하여 민간기록관리 지원에 타당한 기준과 근거를 확립하는 일도 진흥원이 담당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민간기록관리 진흥조직은 시민기록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통해 시민사회에 지속 가능한 기록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로 되는 제반 사항을 민간기록관리를 수행하는 기관과 조직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흥조직은 민간기록의 체계적 수집과 관리를 위한 필요로 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기록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구체적 방안과 나아가 이러한 기관과 조직,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민간기록업무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로 되는 기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둘째,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민간기록관리 체계의 정착은 국가기록관리체계의 개편 및 확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민간기록이 민간에서의 시민의 경험과 기억을 그대로 담고 있고, 민주사회 시민의 정체성 형성에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국가기록관리라는 기록관리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민간기록관리 지원을 위한 공적 지원 체계 구축은 현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기록관리체계 내 개별 주체들이 지역별 생산관리되는 민간기록의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민간기록물이 지역의 기록을 지역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기록물은 공동체에서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 보존에 있어 지자체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현재의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 모색이 필요하며, 이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 산하 문화기관(문화재단, 박물관, 도서관 등)과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민간기록관리 업무에 있어 지자체 기록관, 광역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향후 설립될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간의 역할과 권한 등 개별 기능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의 역할과 지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기능, 직접 시민을 상대하는 지자체 기록관의 역할과 기능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역 단위의 민간기록 수집과 보존에 관한 직접적 민원업무, 지자체 업무를 보안을 위한 포괄적 지원업무, 광역 단위의 제도적, 물리적 지원업무, 민간기록 제도의 전반적 현황과 구조적, 제도적 문제를 담당하는 역할 등 민간기록관리 역시 공공기록관리와 마찬가지로 국가기록관리 체계가 협력적으로 움직일 때 원활히 작동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민간기록 수집, 관리, 활용에 있어 국가기록관리체계 내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지자체 기록관이 함께 업무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기록관리 체계가 그 외연을 확장함을 의미한다.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 체계 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공공기록물법의 개정과 민간기록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흥조직 설립과 진흥법안을 제안하고 뿐 아니라 국가기록원 내 민간기록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기록관리 체계 내에서 민간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총괄적 관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록관리 체계에서 민간기록관리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심축은 사실상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기보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국가기록원의 역할은 이러한 지역의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민간기록관리 정책과 자원, 조직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간기록은 지역을 기반으로 수집·관리되며, 지역 시민들이 자발적인 기증 절차를 거쳐 확보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기록 진흥의 실질적 성과는 지자체와 지역 시민, 지역공동체라 할 수 있다. 지역기록 수집을 통한 지역 정체성의 확립과 지역 기록문화의 확산이 목적이자 실질적 성과로 지역을 근간으로 한 민간기록의 수집과 시민기록문화 활성화에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은 핵심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질적으로 기록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통한 재정 및 인력의 지원, 민간기록을 위한 물리적 공간 및 시설의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장은 기록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 사업과 시민기록문화 진흥사업을 지원하되 지자체에서 지원 방식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민간기록관리체계는 공공기록관리처럼 의무사항이 아니라 민간기록관리에 관심 있는 지자체에 인력과 자원 지원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공공기록관리와 제도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차이가 있다는 상황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개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명에는 지역의 민간기록의 수집과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과 시민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민간기록관리 및 시민기록문화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민간기록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지자체 기록관이 민간기

록 수집과 관리, 활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⁸⁾.

이러한 국가기록관리체계 내에서 민간기록관리 및 시민기록문화 활성화에 대한 지원 체계 수립은 사실상 국가기록관리 체계 내 하나의 주체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각 부분의 역할 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할과 기능이 국가기록관리 체계 내에서 전체적인 상호 연관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 기록관이 민간기록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상위 체계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나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광역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나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역시 지자체 기록관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문화기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및 공동체 간의 거버넌스 구성과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공공기록관리 체계와 마찬가지로 민간기록관리 체계 역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 간의 역할과 기능

8) 민간기록업무는 공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개별 기록관의 자발적 선택사항이 되어야 한다. 민간기록 활성화를 목표로 필요로 되는 제도적 지원은 국가기록관리체계 내 주체로 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특수기록관에서 각 영역에 적합한 민간기록을 수집·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민간기록 지원을 위한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활용은 주류 아카이브나 문화 기관이 중심이 되어 민간기록을 수집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모델과 유사하다. 사회의 공적 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회 전반에 대한 기록화 활동을 수행하고, 공적 수집기관으로서 민간기록 수집정책을 수립하고 다시 이를 지원하고 있다(이경래, 2015).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진흥법과 진흥원 조직을 통한 공동체 아카이브 및 비영리 단체의 기록 활동 지원과 시민기록활동 육성을 추구함으로써 민간기록에 대한 하향식 공적 지원뿐 아니라 민간기록 생태계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기회를 열어두고자 한다. 단, 중요한 점은 국가기록관리체계의 관점에서 기록관리 주체들의 민간기록관리 업무는 공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지역적, 기관별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자발적이고 선택적 사항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민간기록 활성화와 국가기록관리체계 내에서 민간기록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록물법의 개정과 민간기록관리 진흥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국가기록원, 2021).

분배, 그리고 광역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 기록물관리기관 간 다양한 위계에서의 권리와 역할 분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면, 공공기록관리 기능과 역할에 떠밀려 민간 기록관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5. 나가며

원활한 민간기록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민간기록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기록의 체계적 수집과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국가기록관리 체계 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기록관리체계 내 민간기록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국가기록관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기록물관리법」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 부분의 개정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특수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등 국가기록관리체계 내 기록물관리기관이 공공기록물뿐 아니라 민간기록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하다. 민간기록관리진흥법의 대상은 지역과 지역기록이지만 사실상 교육청, 중앙부처 기록관, 헌법관리기관 기록관 역시 기관 역사나 업적에 관한 중요한 민간기록물은 수집, 주제 관련 동시대 기록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민간기록물이 영구보존기록, 메뉴스크립트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국가기록원이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과 특수기록관 역시 관련된 주제 영역에 관한 민간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기록 관리를 위한 개정을 통해 우선 국가기록관리체계의 민간영역으로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기록관리가 행정기록 중심의 행정적 기능에서 문화적 기능으로의 변화와 확장을

폐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민간기록이 영구보존기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기록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준현용 기록관리 중심에서 비현용 보존기록 중심의 아카이브적 기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민간기록수집 및 관리 및 민간기록문화 활성화를 위한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공공기록관리와 민간기록관리 영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기록관리 기본법으로 입법 방향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관리 체계는 공공영역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투명한 기록관리 확립하고 민간영역에서는 건전한 민주사회를 지속하기 위한 문화적 도구로 민간기록관리의 활성화와 시민기록문화의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민간기록관리의 중심이자 시민기록문화 진흥의 중요한 주체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점점으로 공공기록관리와 민간기록관리가 하나의 기록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는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공공기록관리와 민간기록관리를 아우르는 기록관리 기본법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2021). 『민간분야 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완료보고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 국가기록원
- 김세경 (2007). 우리나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규의 변천. 한국기록학회지, 7(1), 5-38.
- 김익한 (2010). 마을 아카이빙 시론, 기록학연구, 26, 151-172.
- 김지현 (2014). 미국, 캐나다, 호주 주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분석, 한국 기록관리학회지, 14(3), 105-126.
- 김영선, 오효정, 이정은 (2021). 시민참여형 공모전을 활용한 민간기록물 수집 활성화 방안 : 전주 시민기록관의 기록물 수집공모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37-60.

- 배양희, 김유승 (2017). 민간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기록학연구, 53, 120-159.
- 손동유 (2019). 민간분야 공동체 아카이빙의 성과와 과제, 실천민속학연구, 34, 39-63.
- 주현미 (2020). 노회찬 아카이브 기초연구, 기록학연구, 68, 244-279.
- 윤은하 (2021). 민간기록관리와 아카이브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9, 35-62.
- 이경래, 이광석 (2013).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 기록학연구, 37, 4-39.
- 이경래 (2013).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와 비판적 독해, 기록학연구, 37, 226-264.
- 이연창 (2021). 관계형 아카이브 환경모형, 기록학연구, 69, 63-91.
- 이해준 (2001). 지역기록물 관리기관의 설립과 운영방안, 역사와 담론, 30, 177-200.
- 임신영, 이혜원 (2021). 민간분야 기록관리 관련 현황 및 시사점: 기록관리이슈페이퍼 vol.30, 19-41.
- Fisher, R. (2009). In search of a theory of private archives: The foundational writings of Jenkinson and Schellenberg revisited. *Archivaria*, 67, 1-24. 재인용: 김지현 (2014). 미국, 캐나다, 호주 주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105-126.
- Caswell, Micheal. (2014). Defining human rights archives: introduction to the special double issue on archives and human rights, *Archival Science* vol. 14, 207-213.
- Gilliland, A., & McKemish, S. (2014). The role of participatory archives in furthering human rights, reconciliation and recovery. *Atlanti: Review for Moder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78-88.